

사.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명시토록 규정 신설

아.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안 60조의2)

-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토록 신설

자.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티알피건설(주)(강충모) ②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전권식)

나. 전화번호 : ① 02-6212-1616 ② 02-3462-3047

2. 명칭 : 가소성분 분리에 따른 경질화 및 내구성 저하를 방지한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내의 가소성분의 분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고무성분의 가교반응을 유도하여 컴파운드의 탄성 및 강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저장안정성의 향상으로 가소성분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과, 또한 바탕면과의 부착에 있어 전면접착이 아닌 선형의 부분접착을 통해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 수 할 있도록 개발된 자착식 고무아스팔트 시트 상부에 고탄성의 도막재를 도포하여 이중의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가소성분의 분리에 따른 시트의 경질화, 균열, 바탕과의 박리·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 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무절점 인장응력의 배제에 따른 방수층 파단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 방수안정성을 향상시킨 TRIPLEX에 관한 것이다.

<범위>

가소성분의 분리를 억제하여 시트의 경질화 및 그에 따른 내구성 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바탕면과의 부착에 있어 부분 부착을 유도함에 따라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한 자착식 고무아스팔트 시트의 개발과 그 상부 고탄성 도막 방수재를 이중 복합하여 장기적 방수 안정성을 향상시킨 TRIPLEX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 체 명: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환경·안전협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옥토끼빌딩 5층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4-11 비02